E - 66 - 2012

채석장에서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0 작성자 :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김두현 교수

o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o 제·개정 경과

- 2011년 6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- 2012년 4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o 관련규격 및 자료

- KOSHA GUIDE E-4-2012(아크용접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)
- KOSHA GUIDE E-40-2012(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)
- KOSHA GUIDE E-48-2012(가스 폭발분위기에서의 전기설비 설계,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)
- KOSHA GUIDE E-109-2011(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
- Electrical safety in quarries(HSE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(전기로 인한 위험방지)

0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월 2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E - 66 - 2012

채석장에서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채석장에서의 천공작업이나 낙하물 등에 의한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습윤 상태의 기계장치를 다루면서 발생되는 전기 위험성을 식별하고, 채석장 내의 작업과 장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채석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시스템의 적합성, 설치,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유자격자(Qualified person)"라 함은 「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」제 3조의 별표 1에 의한 다음 1의 자격·면허·기능 또는 경험을 가진 자를 말한다.
 - ①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전기기능사·철도전기신호기능사 이상의 자격
 - 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
 - ③ 「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
 - ④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
- (나) "안전 초저압(SELV; Safety extra-low voltage)"이라 함은 초저압을 초과하지

E - 66 - 2012

않는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계통으로서 정상 운전하에 있고 다른 전기회로에 서 지락고장을 포함한 단일 고장상태하에 있는 전기계통을 말한다.

- (다) "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"라 함은 정격 감도전류가 30 mA 이하이고 동작시간 이 0.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말한다. 단, 습한장소에서는 15 mA의 전격 감도전류를 요구할 수 있다.
- (라) "폭발위험장소"라 함은 전기기계기구를 설치·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가스 등에 의한 폭발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.
- (마) "활선작업"이라 함은 노출 충전된 도체나 기기 등을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·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전기설비의 안전성

- (1) 채석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설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 - (가) 사용 목적
 - (나) 장비 사용자
 - (다) 사용전압, 전류 그리고 함께 사용할 다른 장비
 - (라) 환경상태 습윤 상태, 차량의 통행 및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, 천공가능성, 동 물로부터의 파손과 손상의 위험성, 가연성 증기나 분진 및 먼지의 노출정도

E - 66 - 2012

등

- (2) 전기설비는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구성되어야 한다.
- (3) 채석을 하기 위한 전기기계기구(이하 시스템이라 한다.)는 유자격자가 설치하여야 하고, 설치된 시스템은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.
 - (가) 시스템은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기록하고 라벨로 표시되어야 하고, 전기회로 에 대한 수정사항도 기록되어야 한다. 각각의 도체들은 쉽게 확인이 되도록 도면에 표시가 되어야 한다.
 - (나) 시스템은 회로나 장비의 개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,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 페기에 의해 설비의 각 부품들이 회로 분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(다) 시스템은 과전류나 누설전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, 회로차단기 등과 같은 적절한 보호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. 전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30 mA의 동작전류를 갖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더 높은 동작전류를 갖는 누전차단기는 설비보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.
 - (라) 시스템은 시설의 안전검사, 시험, 결함발견 및 보전업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. 시험을 위해 제어반을 열었을 때 내부는 적어도 IP XXB 또는 IP 2X XIV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활선도체와의 접촉위험성을 감소시켜야 한다.
 - (마) 시스템은 정상적인 사용인 경우에 교류 50 V 이상의 활선도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밀폐시키거나 설치하여야 한다. 정기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내부 부품들이 보호받지 않는다면, 전류의 공급이 차단될 때까지 커버의 열림이나 점검문의 개방을 방지할 수 있는 인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(바) 시스템은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충격으로 인한 위험성이 최소화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 이것이 어려운 장소에서는 외장케이블 사용, 방폭설비나 기계적으로 강한 외함 등을 사용하여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.

E - 66 - 2012

- (사) 설치된 시스템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고 설치 된 인터록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- (아) 시스템은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충분한 지지물로 도체와 접속부에 대한 전기적 및 기계적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.
- (자) 시스템은 권한이 있는 직원에게도 분전반, 변전소, 고전압 장비 등에 대해서는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.
- (차) 시스템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에 안전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, 또한 사용권한을 얻어야 한다.
- (카) 중요한 작업을 하는 조작자에게 사용상 안전이 입증되었다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.
- (4) 모든 전기설비는 고장난 경우에도 이중절연 또는 절연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접지하여야 한다. 접지와 본딩에 의존하는 설비들은 설비 전체에 걸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.
- (5)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는 KOSHA Guide E-48-2010(가스 폭발분위기에서 의 전기설비 설계,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)을 따른다. 무선주파송신기, 전기가 공급된 시설 및 가공전선은 기폭장치로서 위험성을 만들 수 있다.
- (6) 전기설비는 폭발물이 채석장에서 사용되어질 것을 대비하여 안전하게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.
- (7) 분전반 또는 변전소 등은 가스를 포함한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의 저장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5. 안전전압

E - 66 - 2012

- (1) 일반적으로 사용전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감전의 위험성도 낮기 때문에 가능한 곳에서는 110 V, 혹은 그 이하에서 동작하는 휴대형 장비를 사용하거나 안전 초저압 계통(SELV System)을 사용한다. 이러한 전압을 공급하는 케이블이 파손되더라도 치명적인 전기 쇼크를 줄여준다.
- (2)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거나 금속탱크와 같은 폐쇄되고 도전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더욱 낮은 전압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. 12 V 또는 24 V에서 동작하는 핸드램프는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적당하지만, 아크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고, 무부하시 출력측 전압을 25 V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(3) 교류 220 V의 전압이 필요한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주의 깊게 평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외장케이블을 사용하거나, 전원측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4) 교류 132 kV의 고전압 계통 작업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유자격자여야 하며, 오직 허가받은 작업자만이 작업해야 한다.

6. 전력선 및 케이블

- (1) 차량이나 이동시설물은 가공전력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. 차량 및 이동시설물이 직접적으로 가공전력선의 도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, 또한 전압과 조건에 따라 먼 거리에서도 아크를 발생시킨다. 필요하다면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공전선의 경로를 재설정하여야 한다.
- (2) 차량이나 이동시설물이 가공전선 주위의 위험지역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전력선 접촉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.
 - (가) 덤프차의 적재함을 올린채로 운행 및 작업이 필요한 덤프차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.

- (나) 일시적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단락접지용구를 이용하여 전선을 접지시킨다.
- (다)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력선을 재배치하거나 땅에 묻는다.
- (라) 전력선 측면과 아래에 깃발이 달린 경고 로프를 설치한다.
- (마) 전력선의 각 측면에 외부 도체와 수평하고 평행하게 5 m의 유효한 울타리(높이 2 m, 충전부 이격거리 3 m)를 설치하고, 울타리 지역 내에서 작업에 필요한 어떤 물건도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표시를 한다.
- (3) 굴착공사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중케이블의 경로를 명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. 필요하다면 지중케이블을 우회시켜야 하고, 모든 케이블과 경로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한다. 다른 케이블도 사고로 파헤쳐지는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 치가 되었을 때 또는 발견되었을 때도 이러한 사항을 기록한다.
- (4) 지중케이블은 외부충격에 파손되거나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한다. 고전압 케이블이 충격을 받거나 예리하게 구부러지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- (5) 굴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케이블의 매설 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지중케이블 이 위치한 지역을 점검해야 한다. 또한 케이블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수작업으로 굴착하여야 한다.
- (6) 통전 상태에서 케이블을 이동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.
- (7) 가요성케이블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주의 깊게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하며, 접지의 건전 상태와 기계적 손상의 위험성에 주의해야 한다.
- (8) 접지 고장으로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지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고, 손상 위험성이 큰 장소에서는 도전성이 있는 가요성 외장재를 갖춘 케이블을 사용한다.

E - 66 - 2012

7. 유지관리

- (1) 모든 전기설비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, 전문가에 의해 검사, 조사, 시험 및 예방보전 조치를 받아야 한다.
 - 주) 유지관리는 모든 결함을 규명하고 전기설비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검사, 조사 및 시험을 포함한다.
- (2) 육안점검은 일반적인 결함의 많은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만 전부 찾아낼 수 없으므로 매일 실시해야 한다.
- (3) 조작자는 전기설비의 체계적 유지관리에 대한 서면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 이 계획서는 인터록, 트립와이어, 비상정지장치와 같이 기계적인 보호의 한부분을 구성하는 형태의 전기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.
 - (가) 계획서는 수행해야 하는 유지관리 내용과 주기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. 예 방보전은 일반적으로 설계자/제조자의 권고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사용조건 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(나) 계획서는 그 일을 하는 작업자를 위해 필요한 사용방법, 기록보관, 기술 등에 대하여 명시해야 한다.
 - (다) 작업자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는 즉각적인 위험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예방하는 행동지침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.
- (4)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작업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변경사항 등이 포함된 전기설비 도면
 - (나) 유지관리 해야 하는 장비 목록
 - (다) 설계 제원과 이전 시험 결과 등을 포함하는 관련 자료

- (5) 작업자는 제조자의 권고에 따라 시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. 시험 장비는 안전해야 하고, 시험 결과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, 그리고 결함에 대하여 식별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.
- (6) 장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꼬리표나 표식을 통해 점검되어진 장비를 표시하거나 다음 점검일을 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.
- (7) 검사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는 유지관리를 행하는 작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정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. 전문용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어떠한 치명적인 결 함도 명백히 지적되어야 한다.
- (8)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외부검사
 - (나) 내부검사
 - (다) 회로의 도전성
 - (라) 지락 루프 임피던스
 - (마) 전기적 보호의 효과
 - (바) 회로의 절연저항
 - (사) 기구의 절연저항
 - (아) 예상 고장전류
 - (자) 누전차단기 동작
 - (차) 접지 및 본딩의 효과

E - 66 - 2012

- (카) 휴대기구
- (타) 극성
- (파) 접지전극 저항
- (9)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성이 발현되기 전에 그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점 검, 진단 등의 정기적인 주기가 설정되어야 한다. 그 주기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.
 - (가) 장비 및 설비의 유형
 - (나) 습윤상태 또는 물리적 손상위험성 등과 같이 장비 및 설비가 사용되는 장소
 - (다) 장비 및 설비의 고정 및 이동 여부
 - (라) 사용빈도, 즉 24시간 사용 혹은 일 년에 한번 사용
- (10) 주기는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, 저압에서 운전되는 설비의 주기는 다음과 같다.

8. 작업방법

(1)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, 시험 혹은 수리에 있어서 안전한 작업이행이 중요하다. 전 기설비의 활선작업은 장비 덮개를 제거 또는 분해, 부상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안전장치의 제거를 의미한다. 모든 작업자는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 어야 하며, 고위험 작업은 일반적인 작업허가서를 받은 후에 수행되어야 한다.

<표 1> 육안점검, 정밀진단 및 조사, 시험주기

구분	내용	주기
육안	수공구(플러그, 소켓, 케이블 포함)	매일 혹은 사용 전
점검	기타 휴대장비	매 3개월
정밀	설치장비의 외부부품	매 6개월
진단	전기설비의 접근 가능한 내부부품	매 1년
및 조사	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부품을 포함한 기 타 다른 전기설비 부품(스위치보드의 내 부부품, 전동기, 단자함, 연결함 등)	매 5년
시험	위험성이 큰 이동식 기구의 접지, 본딩	매 월
	기타 시스템	매 6개월, (열화 위험성이 낮으면 매 1년)
	선로 저항의 재평가	매 3년
	접지전극저항	매 1년
	절연저항	매 6개월
	지락 루프임피던스	(열화 위험성이 낮으면 매 1년)
	보호장치의 개로주기	접지루프 임피던스 시험을 따름
	고정된 누전 차단기	매 3개월(시험버튼) 매 6개월(타이밍시험)
	극성	매 10년(매년 10%의 차이 발생)
	휴대기구	매 3개월에서 1년
	예방보전	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제조자/ 설계자의 권고를 따름

- (2)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행되며, 이러한 모든 조건은 활선 및 활선근접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조성되어야 한다.
 - (가) 정전상태에서의 작업이 곤란한 경우
 - (나) 활선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
 - (다)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취해졌을 경우

- (3) 활선작업에 대한 결정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의 재량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. 작업자는 규정대로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작업 상태에 대한 허가를 받고 예방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. 그리고 시험 장비 및 도구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, 사용, 유지보수되어야 한다.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사항은 KOSHA Code E-30-2005(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을 따른다.
- (4) 정전작업이 필요하다면,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제외하거나 주말, 휴일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셧다운 시간에 계획을 수립한다.
- (5) 회로 분리는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설비가 정전되어 있고 우연하게 재연결될 수 없도록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. 스위치를 내려 전기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, 회로가 통전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고 확인될 수 있는 분리계획이 필요하다.
- (6) 잠김 스위치를 열림 위치로 놓음으로써 전기설비의 분리상태는 확보된다. 열쇠는 유일해야 하며, 여분의 열쇠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한다. 작업 기간 동안 퓨즈를 제거하고 보관하는 것만이 허용된다. 또한 다음의 추가적인 행위도 요구된다.
 - (가) 타인이 여분의 퓨즈를 설치할 가능성을 없앤다.
 - (나) 퓨즈설치로(Fuseway)를 적당한 경고문구가 있는 접착 테이프로 봉한다.
 - (다) 퓨즈설치로에 자물쇠로 안전하게 한다.
 - (라) 퓨즈설치로의 밀폐함을 안전하게 유지한다.
- (7) 회로 분리 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로가 정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회로에 대하여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. 작업 지점에 한 개 이상의 전원이 있는 복 잡한 상황의 경우에는 작업 범위 및 분리에 대하여 작업허가서가 필요하다.

- (8) 고전압 장비에서의 작업이나 근접작업은 평가를 필요로 하는 높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유자격자에 의해 작성된 작업허가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고전압 개폐 장치를 조작해야 한다.
- (9) 고전압 장비에서의 작업이나 근접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예 방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. 회로가 정전되어 있고, 접지되어 있고, 접지상태가 확고하다는 것이 보장되도록 분리시키고 시험해야 한다. 분리 지점에는 주의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근접해 있는 활선장비에 대해서는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